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0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

2. [redacted]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1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9,6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redacted]시 [redacted]구 C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6. 8. 25.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B의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2014년 12월경) 기타	기말 (지분율)
D	750	(750)					
E	250	(250)					
F	12,000	(12,000)					
G	35,352		35,352 (8.67%)		35,352 (8.67%)	**(35,352)**	
H	35,515		35,515 (8.71%)		35,515 (8.71%)	**(35,515)**	
원고	323,883		323,883 (79.43%)	(28,000)	295,883 (72.56%)	**70,867**	366,750 (89.94%)
주식회사 [redacted]		13,000	13,000 (3.19%)	28,000	41,000 (10.06%)		41,000 (10.06%)
합계	407,750		407,750		407,750		407,750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407,750주 중 295,883주(72.5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 12월경 G, H으로부터 각 35,352주, 35,515주 합계 70,867주(17.38%,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에 기하여,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6.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61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9,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피고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2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과 2016. 8. 16.에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과 2016. 11. 4에 각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설립 당시 적용되던 상법 규정에 따라 원고 외 7인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그들이 자본금을 출자한 것처럼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고, 이후 B의 증자 시에도 원고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들의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왔는데, 장기간 차명으로 방치할 수 없어 2014년도 결산 시에 차명주주인 G, H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점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1976. 8.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였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데, 발기인은 원고, I, J, K 등 8명이었다.

2) G과 H은 1992. 2. 22. L과 사이에 그가 주식양수 및 유상·무상증자의 형식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의 주식(G: 3,000주, H 1,516주)을 주당 3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G은 1992년경 I로부터 B의 주식 1,728주를 주당 3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G과 H은 위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원고는 1998. 11. 30. [redacted]세무서장에게 I, J, K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B의 주식 합계 5,412주(I: 4,500주, J: 684주, K: 228주)를 자신의 명의로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다.

4) 이후 유상·무상증자를 통해 B의 발생주식 총수는 407,750주가 되었는데, 2002. 9. 25.경 위 발행주식 중 35,352주, 35,515주(쟁점 주식)가 각각 G, H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4년 12월경 G,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쟁점 주식의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갑 제7, 8호증의 각 1, 2)

1. 갑(원고)은 을(G, H)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G: 10,100주, H: 10,149주) 와 이에 기하여 발행된 무상주(G: 25,252주, H: 25,366주) G 총 35,352주, H 총 35,515주를 갑의 명의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위 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주식명의개서 신청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 한편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세목: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2005년도~2014년도)를 실시한 결과, G, H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이고, 다만 쟁점 주식이 G, H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을 확인하였다.

7) 이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역삼세무서장은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399,466,13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G과 H은 쟁점 배당금을 자신들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8) M은 2008. 5. 19.에 B에 입사하여 재무관리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6. 8. 25. 'G, H이 개설하여 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사의 지시가 있을 때 지시받은 금액을 예금 또는 인출하여 B에 가지고 와서 상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B은 쟁점 배당금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H 명의의 [redacted]은행 계좌(O)로 입금하여 오다가, 2014. 4. 22.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는 원고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P)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은 1976. 8. 25.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50,000주였고, 발기인은 원고 등 8명이었는데,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B을 설립할 당시 일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1998. 11. 30. [redacted]세무서장에게 I, J, K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B의 일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던 점, ③ 이후 원고는 2014년 12월경 G, H과 사이에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각각 작성한 후 쟁점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점, ④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여 쟁점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redacted]세무서장은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이의 쟁점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G과 H은 위 배당금을 배당소득에서 공제하여 위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⑤ B은 쟁점 배당금을 G과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각 계좌는 원고가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B은 쟁점 배당금을 위 각 [redacted]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오다가, 2014. 4. 22.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는 원고 명의의 [redacted]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G과 H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쟁점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G, H은 실질주주인 원고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가 쟁점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끝.